

DMC역 복합개발 사전협상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도시개발특별회계		
사업기간	<input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,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업기간 2022.01 ~ 2022.12		
사업내용	○ DMC역 복합개발 사전협상 감정평가 수수료 및 전문가 자문비용 등		
사업비 (당해년도)	100,000천원	(국비)	(사비)100,00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균형발전본부	서부권사업과	김중호 2133-1550	황동현 2133-1551	권미애 2133-1556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1예산액 (A)	2022예산액 (B)	증감 (B-A)	
				(B-A)*100/A
계	(x-) 0	(x-) 100,000	(x-) 100,000	(x-) 100
사무관리비	(x-) 0	(x-) 100,000	(x-) 100,000	(x-) 100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2년 예산내역	
사무관리비	○ 감정평가 수수료 85,000,000원	= 85,000천원

과목구분	2022년 예산내역		
	○ 전문가 자문수당, 일간신문 공고비용 등	=	15,000천원
	- 전문가 자문수당 150,000원*9회*6명	=	8,100천원
	- 일간신문 공고비용 등 6,900,000원	=	6,900천원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DMC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쇼핑·문화가 어우러진 광역 생활중심지 육성 및 보행자 중심 환승체계 개선
 - DMC역 복합개발 계획 사전협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협상 대상지의 토지가치상승분 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
 - DMC역 복합개발 협상조정협의회 운영에 따른 전문가 자문비용 등의 지급으로 원활한 협상 진행

□ 사업근거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(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)제1항제8호의3, 동법 시행령 제43조
-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2, 제19조의3
-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(감정평가 시행)
-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2. 1. ~ 2022. 12.
- 위 치 : 서울 마포구 상암동 1092번지 외 11필지
- 사업방식 : 사전협상을 통한 철도역사 복합화사업(도시계획시설사업)
- 사업의 주요내용 :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평가수수료 및 자문수당 지급 등
 - 감정평가 추진방법 : 감정평가법인 선정 → 감정평가 의뢰 → 감정평가 실시 → 평가수수료 지급

□ 추진경위

- '18.12. : 코레일 - 롯데쇼핑간 출자회사 설립[롯데DMC개발(주)]
- '21.05. : DMC역 복합개발 사전협상 제안서 접수
- '21.05.~ 10. : 사전협상 제안서 보완

□ 2022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100,000	
협상조정협의회 운영	2022.01~2022.12	15,000	자문수당 지급, 일간신문 광고비용 등
평가수수료 지급	2022.05~2022.10	85,000	감정평가 수수료 지급

4 사업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9년도	
2020년도	
2021년도	○ DMC역 복합개발 제안서 접수('21.5월), 실무협의 시행

□ 향후 기대효과

- DMC역 복합개발 계획 원활한 협상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사전협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협상 대상지의 공정한 감정평가 시행 등으로 협상의 실효성 제고